

시흥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시흥시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7조에 따른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기준을 같은 조례 제57조의2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의 선거를 말한다.
2. “관할위원회“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라 정비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예비추진위원장“이란, 시흥시장(이하 “공공지원자”라 한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한 예비추진위원장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말한다.
4. “예비감사“란, 공공지원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한 예비감사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추진위원“이란 당선된 예비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진위원으로 추천한 자를 말한다.
6. “예비추진위원회“란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및 예비추진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공지원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에 적용한다.

제4조(선거인) ① 이 기준에서 선거인은 선거가 실시되는 정비구역(이하 “해당구역”이라 한다)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5조(공공지원자의 업무) ① 공공지원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해당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1.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3. 선거공보원고의 심사 및 홍보
4.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선거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
7. 위반행위 단속·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9. 투표소와 개표소의 설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투표의 유·무효의 판정
11. 당선인의 확정

② 공공지원자는 선거종사원을 위촉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지원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흥시 출자·출연기관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지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해당구역 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이 기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주민설명회) ① 공공지원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의 주민설명회를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공지원자가 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일시, 장소, 설명내용 등을 주민설명회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의 위탁 등) ① 공공지원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해당 관할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지원자는 제1항에 따라 선거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사무의 위탁범위는 제5조에 따른 공공지원자의 직무의 범위에서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거의 위탁관리 업무범위에 관하여 관할위원회와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9조(선거권 등) ①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는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선거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소유자 1인에게 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지원자는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법인의 대표자는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명의변경 등 기재사항의 누락·오기 등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선거권이 없다. 다만, 제13조제6항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피선거권 등) ①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는 자로 후보자등록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 목적은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인 자

제3장 선거일, 선거기간 및 선거인명부

- 제11조(선거일)** ① 공공지원자는 후보자확정 공고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상 14일 이내(이하 “선거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선거일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은 가급적 공휴일을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선거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제12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공공지원자는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제9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작업에 의할 수 있다.
- ② 선거인명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구역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인명부에는 등재번호, 선거권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 토지 및 건물 소유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전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는 해당구역별로 선거위탁 및 열람 장소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수를 작성한다.
- ③ 공공지원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즉시 관할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작성상황을 통보한다. 다만, 공공지원자가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 ① 공공지원자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14일 전까지 열람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2. 열람장소
3. 열람방법
4. 열람내용
5. 이의신청방법
6. 제9조에 따른 선거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지원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지원자는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누락, 오기 또는 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지원자는 이의신청 사항을 확인하고,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하며, 모든 이의신청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소유물이 양도·양수 및 증여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변동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선거일 투표시간 내에 공공지원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공공지원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7일 전까지 확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선거인명부 확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지원자가 확정공고한 선거인명부는 해당구역의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장 후보자

제15조(후보자추천) ① 제16조에 따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지원자가 후보자 등록공고 다음날부터 날인하여 발급한 추천서에 의한다.

②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후보의 추천인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추천
2.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추천
3.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

③ 해당구역 모든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추천인이 될 수 있다.

제16조(후보자등록) ① 공공지원자는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후보자를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지원자는 후보자 등록일정 공고일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2일 이상의 기간을 후보자등록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자등록기간 중 후보등록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된 서류의 공개와 확인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3. 제15조의 후보자 추천서
4. 공명선거 및 선거결과에 대한 동의, 낙선 시 추진위원 선임 등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8호서식)
5.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동의 공문서(입후보 동의서)

④ 후보자등록을 한 자는 선거공보 작성안(별지 제9호서식)과 후보자 정견서(별지 제10호서식)를 후보자 확정공고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공지원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공지원자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후보자 기호를 배정하여야 하며, 추첨방식은 순번을 위한 추첨과 기호배정을 위한 추첨방식으로 실시한다.

제17조(후보자 확정) ① 공공지원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 후 지체없이 후보자를 확정하고 후보자등록명부(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에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② 공공지원자는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명부가 작성되면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가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후보자등록 무효) ① 공공지원자는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신이 직접 후보자 사퇴서(별지 제12호서식)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지원자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8조에 의한 위탁선거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9조(정의) ① “선거운동”이란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후보자 확정공고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정함) 선거운동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관할위원회

(선거를 위탁받은 경우)나 공공지원자가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벽보
2. 선거공보
3. 합동연설회
4. 현수막
5. 어깨띠
6. 명함
7.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④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내용과 절차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선거를 위탁받은 경우)나 공공지원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합동연설회) ① 공공지원자는 입후보자의 홍보를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내 합동연설회를 2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연설회에서 홍보를 위한 연설을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연설은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순서로 하며, 배정된 기호 순서에 따른다.

제21조(선거홍보 등) ① 공공지원자가 선거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시, 투표시간, 투표장소, 약도,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학력 및 정견 등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확정 공고일 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지원자는 제1항에 따른 선거통지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재발송하여야 한다.

③ 공공지원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선거홍보현수막을 2개 이상 4개 이하의 범위에서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지원자는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자별 홍보물을 인쇄하여 해당구역 2

곳 이상에 선거벽보(선거공보를 확대하여 인쇄한 것을 말함)를 붙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4곳 이상에 붙여야 한다.

제6장 제한·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제22조(제한·금지) 누구든지 예비추진위원장 또는 예비감사의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5.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제23조(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 ① 공공지원자(제8조에 의한 위탁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선거관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공지원자 등이 그 위반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조에 의한 위탁선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와 선거인 및 그 밖에 선거와 관련된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동행·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공지원자는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문·답변 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위반행

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공지원자가 제1항에 따른 질문·조사를 하거나, 동행·출석요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공공지원자는 관할위원회(제8조에 의한 위탁선거인 경우에는 “공공지원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선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1. 공공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는 사실

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조사 및 조치

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다. 단속사무소 설치(필요한 경우에만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공지원자의 예방·단속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신고

가. 위반행위 단속·조사 활동에 대한 협조 당부

나. 위반행위 발견·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 요청

제2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고발 또는 수사의뢰(공공지원자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공공지원자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수사의뢰 제외)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투표소 첩부,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공지원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거나 공공지원자의 관리 및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7장 선거 및 투·개표

제25조(선거)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제8조에 의한 위탁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기표방법과 전자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선거는 1인이 1표로 직접 투표한다.

③ 투표소 투표관리를 위하여 투표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④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는 선거에서 다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선임한다. 다만, 투표결과 유효투표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단독 입후보자는 후보자 확정공고 후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에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⑥ 공공지원자는 투·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종사원을 둘 수 있으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26조(투표) ① 투표소는 선거인 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 일정한 장소나 인접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설치한다.

② 투표는 공공지원자가 감독하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투표소에는 투표를 위한 선거인, 투표관리관, 투표종사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공공지원자가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⑤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선거인명부와 대조·확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신분증의 종류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투·개표 참관인) ① 공공지원자는 투·개표참관인(이하 “참관인” 이

라 한다)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인중에서 2명 이내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5일 전까지 공공지원자에게 참관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지원자는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참관인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관인은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개표) ① 개표는 공공지원자가 감독하며,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개표소는 투표소와 같은 장소로 한다. 다만, 장소 협소 등으로 같은 장소에서 개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접한 장소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개표소에는 공공지원자, 개표종사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공공지원자가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지체없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개표는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를 구분하여 집계하며, 후보자별 득표 수는 공공지원자가 발표한다.

제29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공공관리자의 날인이 없거나(투표관리관의 사인을 포함한다)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어느 란에도 기표가 안 된 경우
3. 2란에 걸쳐 기표를 하거나 2란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소정의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경우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기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7.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제30조(당선자) ① 공공지원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결과 및 당선자를 공고한다.

- ② 당선자는 당선자 공고로써 그 지위를 득한다.
- ③ 당선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전까지 예비추진위원장 또는 예비감사의 지위를 갖는다.
- ④ 추진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개시한다.

제8장 전자투표

제31조(전자투표) ① 공공지원자(제8조에 의한 위탁선거일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말한다)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 2. 공공지원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 3. 관할선관위의 지원에 따른 온라인투표시스템 혹은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이용한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9장 보칙

제32조(선거관계 서류의 보관) 공공지원자 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모든 선거관계 서류 일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추진위원회 구성 기준) ①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는 공공지원자의 지원을 받아 운영규정 작성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비추진위원의 추천은 예비추진위원장 당선자가 통별, 가구수,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3항을 고려하여 추진위원정수의 110퍼센트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의 낙선자는 당연직 예비추진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낙선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지원자는 예비추진위원을 추천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예비추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승낙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동의서가 작성된 이후에 예비추진위원을 사퇴할 경우 그 수리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⑤ 예비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한다.

제34조(선거관리 경비) 제8조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공공지원자가 부담하며, 공공지원자는 사전에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사항) 이 기준이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6.)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거관리 위탁 협약서

- 1. 선거명 :
- 2. 선거일자 및 장소 :
- 3. 선출대상 및 투표방법 :
- 4. 선거인단 및 투표소 수 :
- 5. 협약내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시장은 위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구 분	협 약 사 항
가. 목 적	
나. 투·개표 방법	
다.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라. 투·개표 조치사항 등	
마. 선거인명부 작성 등	
바. 투표용지	
사. 투·개표소 설비	
아. 개표의 진행	
자. 그 밖의 투·개표 관리절차 등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시장이 각각 날인하고, 본 협약의 충실한 준수를 위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 ○ 시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적(m ²)
		(계 필지)	
		()	
		()	
		()	
권리 내역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위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출과 관련한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 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인) 날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 명 : (인)인감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② 성 명 : (인)인감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③ 성 명 : (인)인감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oo 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대리인지정서

위임장·대리인지정서				
신청인 (위임하는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위임받는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에 따른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출에 관련한 선거권자로서 법률이 정한 권한을 행함에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 . . 신청인 : ○ ○ ○ (인) ○○○ 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선거인명부의 표지]

년 월 일 실시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

선 거 인 명 부

작성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정 : 년 월 일

○○시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감사) 선거(○책중 ○권)

○○시장 인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①	물건지 주 소 ②	소유주 ③	성 별	생년월일	성 명 ④	투표용지수령인⑤		비 고 ⑥
						(가)	(나)	

비고 : 1. 명부기재방법

- ① 등재번호란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구역안의 주소의 지번순 또는 통·리·반 또는 선거인의 성명의 가나다순이나 생년월일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② 물건지주소란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현황을 기재하며, 건물과 토지가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한다.
※아파트 등은 동과 호수를 ()안에 기재한다.
 - ③ 공유지분일 경우 소유자 전체를 기재한다.
 - ④ 성명란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단 대표소유자선임 또는 대리인 지정의 경우에는 두줄로 작성하고 그 위에 선임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 ⑤ 투표용지수령인란중 “(가)” 란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며(동시선거를 포함한다), “(나)” 란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등을 실시할 때에만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다.
 - ⑥ 비고란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시장은 이의·불복신청 또는 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선거관리담당자의 사인을 날인한다.
 - 나. ○○시장은 선거인명부확정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줄로 삭제하고, 오기의 발견 시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줄로 삭제하되,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된 자를 발견하거나 동 사실을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 작성시 뒷란과 같은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시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 추천서

1. 선거명 :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
2. 추천 받는 자

가. 성 명 : (한자)

나. 생년월일(성별) :

다. 주 소 : 도로명 주소

위 사람을 20 . . 일 실시하는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추진위원장, 감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후보자 추천자 명단

[illegible]

* 후보자 추천자 명단의 인란에는 지장(指章)을 날인 후 자필 서명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 첨부

- 추천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자의 인감도장 날인 후 해당 인감증명서 첨부

* 반드시 구역(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위 추천인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사항 기준임.

(기재내용과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해당 추천인 추천 불인정)

○○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감사) 후보등록 신청서				
성명	(한글) (한자)			사진 (반명함판)
주소	☎ 집 직장 핸드폰			
권리내역	(물건소재지)			
	토지 : m ² , 건물 m ² (지분소유 여부:)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최종학력	학교 (졸업·재학·중퇴)			
직장	직장명		직위	
	주소			
사회 경력 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부 ◦ 후보자 정견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별지 제10호 서식) ◦ 이행각서(공정선거 및 선거결과 승복), 후보자 추천서 각 1부 ◦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7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위 본인은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정비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감사)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감인)				
○○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 의 서

☐ 입후보자 인적사항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후보로 등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일체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확인 조사 및 선거기간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위 동의자 성 명 : (인감인)

○○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출에 따른

이 행 각 서

☐ 입후보자 인적사항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후보로 등록함에 있어 공정선거 이행 및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낙선 시에는 추진위원에 선임되는 것을 동의하며, 향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을 서약 합니다.

20 . .

위 각서인 성 명 : (인감인)

○○시장 귀하

선거공보 작성(안)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후보자

- 제출시기 : 후보자 확정공고일까지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임의
- 디자인 : 후보등록자가 홍보물 디자인하여 제출
 - 여백이 없도록 디자인
 - 글씨체, 크기 임의
 - 칼라 사용가능
 - 우측상단 선거명의 위치·크기는 변경불가
- 칼 라 : 사용가능
- 제출매수 : 2매 및 전산파일(원본 및 PDF파일)
- 기재사항
 - 성명, 나이, 후보자 기호
 - 사진(크기임의)
 - 학력·경력 등 주요약력
 - 정견 또는 공약

<별지 제10호 서식>

후보자 정견서

☐ 선거명 :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선거

☐ 입후보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소 :

☐ 정견내용

-

※ 작성방법 예시

- A4용지 2매 이내(글씨 크기 12포인트 이내 신명조체)로 함.
- 본인의 입후보 배경 및 당선시 추진업무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되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아니 되며, 제출된 정견서는 오는 00년 0월 0일 개최되는 지구(구역)별 후보자 **합동연설회** 때 원고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출인

후 보 자

(인감인)

○○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명 부

- 1. 선거명 :
- 2. 후보자 명단

기 호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비 고
	○ ○ ○ (한 자)						

년 월 일 실시하는 ○○시의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 등록 명부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시장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비고 : 1.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합니다.
2.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합니다.
3. 학력은 정규학력을 기재하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후 보 자 사 퇴 서

☐ 선거명 :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

☐ 입후보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소 : 도로명 주소

☐ 사퇴사유

-

위 본인은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의 후보자로서 개인사정으로 사퇴합니다.

제출인

후 보 자

(인감인)

○○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투·개표 참관인 등록신청서			
성명	(한글)	(한자)	사진
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권리내역	(물건 소재지)		
	토지 : m ² , 건물 m ² (지분소유 여부:) %		
직장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 및 이력	년월일(기간)	주요경력 및 이력사항	
구비서류	투·개표 참관인 승낙서		
위와 같이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위원장·감사) 선거의 투·개표참관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후보자 (인) ○○시장 귀하			

- 비고 1. 투·개표참관인은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합니다.
2. 투·개표참관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투·개표 참관인 승낙서

1. 성 명 :
2. 생년월일(성별) :
3. 주 소 :
4. 직 업 :

위 본인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 후보자의 참관인으로 등록 신청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위 승낙인 ○○○ 인

○○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예비추진위원 승낙서

1. 성명 :
2. 생년월일(성별) :
3. 주소 : 도로명 주소
4. 직업 :
5. 권리내역 :

0

위 본인은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고, 동 구역 예비추진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을 승낙하며, 예비추진위원으로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33조제4항에 따라 사퇴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승낙인 ○○○ (인)

○○시장 귀하